

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1432	시 민			
결재일자	2013. 1. 17.	주무관	아동권리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 2013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계획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지역아동센터) 무 <input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아동복지)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중 앙 부 처 : 유 ■ (보건복지부) 무 <input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 민 간 단 체 : 유 ■ (지역아동센터 서울지원단) 무 <input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관 계 기 관 : 유 ■ (보건복지부) 무 <input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민 간 단 체 : 유 ■ (지역아동센터) 무 <input type="checkbox"/>
	● 시 산 하 기 관 : 유 ■ (자치구) 무 <input type="checkbox"/>

목 차

I. 추진 근거	1
II. 추진 배경	1
III. 추진 실적	1
IV. 추진 체계도	2
V.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계획	3
1.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기준	3
2.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기준	5
3.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8
4. 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 지원기준	10
5.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기준	11
6.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지원기준	12
7. 지역아동센터 전자출결시스템 지원기준	13
8.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기준	13
VI. 2013년 기타사업 지원 계획	14
VII. 2013년 주민참여예산 지원 계획	15
VIII. 행정 사항	16

- 2013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계획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2013년도 방과후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확정내시 및 운영지침

II 추진 배경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급식, 기타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에 대해 2004년부터 법적근거(아동복지법 제52조)를 마련하여 지원 시작

III 현황 및 추진 실적

○ 현 황('13년 1월현재)

구분	총 개소수		종사자수	이용 아동수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
	운영비						
	미지원	지원					
415	66	349	915	10,171	24	24	180

○ 실 적('12년말 현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 원	96	97	180	214	276	296	323	349
예 산	2,280	2,328	4,320	5,544	9,378	12,073	14,417	18,554

IV 추진 체계도

추진 주체		기능 및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 권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평가 기본 계획 수립 ●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 마련, 국고보조 등 사업 총괄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방과후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종사자 인력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데이터 및 실적관리 ●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관리 및 교육지원 등
서울시	아동청소년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예산 지원 등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방과후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사회 조사연구사업 및 정보관리 및 데이터 관리·운영 ● 아동복지교사 교육지원 등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관리·운영지원 ●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확인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예산 지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 아동복지교사 채용·노무관리·사용 등 제반 업무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지자체 협조 등

V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계획

1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2013년 주요 변경지원 사항

(단위 : 천원)

유형별	이용아동수	상근종사자	12년지원 기준액	13년지원 기준액(안)	비고
소규모형	19인 이하	2	3,550천원	3,800천원	±10%
표준형	29인 이하	2	3,750천원	4,200천원	
확대형	30인 이상	3	4,650천원	5,200천원	

지원개요

- 기 간 : 2013년 1월 ~ 12월(12개월)
- 사 업 량 : 387개소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 예 산 : 18,234,800천원(국비 30%, 시비 70%)

기본방향

- 2012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자치구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2011년 신규설치 시설 중 신규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 진입평가를 통과한 후 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운영비 지급

지원시설 선정 및 지원액

- 기 지원시설 : 349개소('12년 12월말 지원기준)
 - 자치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자치구 점검결과 반영 및 지원 대상 최종 선정
 - 2012년 자치구 점검 시 부적격 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 미 개선 시설에 대한 감액 지원 확정

- 보건복지부 2013년 운영지침 등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 후 서울시에 보고

〈 자치구 점검 부적격 시설 〉

- 부적격 사항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 유예기간 경과 후 미개선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 종사자 기준 등 법령기준 미달 : 기본운영비의 50%이내 감액지원
 - 지침사항 등 경미한 위반 사항 : 기본운영비의 30%이내 감액지원
- ※ 자치구에서 별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 자치구 유예기간 우선 적용

○ 신규시설 : 38개소

- '13년도 진입평가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
- 평가 대상 : '11년 1월부터 '12년 2월말 현재 신규설치한 시설
- 진입평가 후 부적격 시설은 컨설팅을 통한 재평가 실시 후 반영

○ 지원기준 : 이용아동 수 및 상근종사자에 따라 월 380만원 ~ 520만원 차등지원

- ※ 기존 9인 이하 시설은 운영비 기준의 60%이내(2,280천원)에서 자치구에서 지원결정
- ※ 기존 운영비 차감시설은 진입평가 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 조정 가능
- ※ 자치구 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

○ 운영비 지급 기준인원

기준정원	운영비 지급 기준인원	비 고
9인 이하	6인 이상	
19인 이하	15인 이상	
29인 이하	24인 이상	
30인 이상	33인 이상	

- ※ 기준인원 미만일 시 정원대비 부족인원에 대한 금액(운영비/정원수*기준대비 부족 인원수×20%)을 차감하여 지급
- ※ 이용아동 중 장애아동 1인은 1.5인으로 산정하고 산정된 아동수 5인(장애아동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장애 소견자에 한함)

②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거점·특목·토요운영) 지원기준

■ 2013년 주요 변경지원 사항

(단위 : 천원)

유형별	12년지원 기준액	지원기간	13년지원 기준액(안)	지원기간	비고
거점형	1,200	10개월	1,200	11개월	
특수목적형	1,000	10개월	600	11개월	
토요운영	300	10개월	400	11개월	

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개요

- 목 적 : 지역사회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등 지역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 내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 지원개소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 지원기간 : 2013년 2월 ~ 12월(11개월간)
- 지원금액 : 개소당 1,200천원(±500천원)
- 예 산 : 330,000천원(국비 30%, 시비 70%)

■ 지원 대상

- 운영비 지원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이거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서 1년 이상 운영한 시설

■ 필수 사업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등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성·운영
 - 자치구,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 자원 공동 개발·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지원 연계
- 소규모·영세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 지원
 - 지역 내 타 센터에 대한 운영컨설팅
 -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용 등으로 멘토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보호, 교육, 문화, 아동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사례관리

○ 신규시설 현장실습기관으로 운영 컨설팅 실시

- 2013년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현장실습기관으로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등

■ **선택 사업**

- 기타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동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

■ **선정 기준**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주체 역량, 운영 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업 운영, 시설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등 노하우가 필요하기에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재심사 없이 연속하여 선정 가능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 ① 운영 기간 3년 이상, 신고정원 29인 이상이며, 타 시설 및 시군구와의 연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 ②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 역량이 우수한 시설
- ③ 시설 전용면적 120.0㎡ 초과, 법적 시설 요건(사무실·학습지도실·조리실·식당) 외에 도서관, 상담실 등 별도 공간 확보 시설
- ④ 외부자원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거점형 센터로서 요구되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시설

②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개요**

- 목 적 : 주요기능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반영하여 이용아동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개소 : 30개소(자치구별 1~2개소/지역아동센터 수에 따른 차등선정)
- 지원기간 : 2013년 2월 ~ 11월(11개월간)
- 지원금액 : 개소당 600천원(±300천원)
- 예 산 : 208,000천원(국비 30%, 시비 70%)

■ 지원 대상

- 장애, 다문화, 새터민 아동 등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 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결과 장애소견자에 한함
- 중·고생 전용시설이나, 중·고생의 비율(50% 이상)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 초·중·고생 혼용 시설은 별도 공간이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 야간(오후 8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야간 운영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지원대상에 한하는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시설별 재정지원 강화

■ 선정 기준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비 지원 시설 중 운영주체의 역량이 뛰어나고, 평가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 다문화, 새터민, 중고생, 야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③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개요

- 목 적 : 2012년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 돌봄서비스 욕구

제공 및 현장대응력 강화

○ 지원개소 : 운영비 지원·미지원 및 미신고센터 등 240개소

※ '11년 93개소 ⇒ '12년 160개소 ⇒ '13년 240개소 ⇒ '14년 320개소

⇒ 신청 시설이 240개 이상인 경우 거점·특목적형 등 보조금 중복 수혜시설부터 제외

○ 지원기간 : 2013년 2월 ~ 12월(11개월간)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400천원(±100천원)

○ 예 산 : 890,000천원(국비 30%, 시비 70%)

■ 지원 대상

○ '13년 1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설(미 지원, 미 신고시설도 참여가능)

※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는 매주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선정 기준

○ 토요일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거점형·특수목적형으로 지원받지 않을 시설을 우선선정, 수요가 없을 경우 중복 가능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 ① 토요일 돌봄 서비스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시설
- ② 이용아동 중 토요일 돌봄 서비스 욕구가 많이 예상되는 시설
- ③ 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고 없고 역량이 우수한 시설
- ④ 10회 이상 토요일 돌봄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 ⑤ 미 지원 및 미 신고 시설 중 운영 역량이 우수한 시설
- ⑥ 그 외 구청장이 운영 역량 등을 감안하여 추천하는 시설

3]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

2013년 주요 변경지원 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종사자 처우수당		특수근무(자격증 수당)		비 고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시설장	130	150	-	10	
종사자	130	150	-	10	

2013년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기준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목 적 :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잦은 이직을 보완하여 아동의 안정적·정서적 서비스 강화
- 지급방안 : 타 사회복지 이용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시설장	130	150	170	190	
종사자	130	150	150	150	

- 지급대상 : 운영비 지원 시설(미 자원센터 운영비 보조시설 포함) 시설장 및 종사자
- 지급시기 : '13년 1월 ~ 12월
 - ※ 기존시설은 1월부터, 신규시설은 1년 이상 운영시설 운영비 지원과 연동하여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15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종사자 급여일에 지급(자치구 대상자 신청 → 시 재배정)
- 소요예산 : 1,512,000천원(전액시비)
 - 산출기초 : 840명 × 150,000원 × 12개월 = 1,512,000천원

■ 특수근무(자격증) 수당 지원 기준

- 지급방안 : 단순한 급여 보전이 아닌 종사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근무(자격증) 수당 지급
- 지원계획 : 타 사회복지 이용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사회복지사 1급	10	30	50	
사회복지사 2급이하	10	30	30	

- 지원대상 : 이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2(이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시설장 및 종사자(처우수당과 연계)
- 지급시기 : '13년 1월 ~ 12월
 - ※ 기존시설은 1월부터, 신규시설은 1년 이상 운영시설 운영비 지원과 연동하여 지원
- 지원금액 : 소지 자격증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준

자격기준	지원금액		비고
	시설장	종사자	
사회복지사 1급	10,000원	10,000원	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의 자격에 해당하는자 중 사회복지사 1급 상당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 이하	10,000원	10,000원	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복지사의 자격에 해당하는자 중 사회복지사 2~3급 상당 자격증 소지자

- 지급방법 : 매월 종사자 급여일에 지급(자치구 대상자 신청 → 시 재배정)
- 소요예산 : 101,000천원(전액시비)
 - 산출기초 : 840명 × 10,000원 × 12개월 = 101,000천원

4 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 지원기준 【'13년 신규】

○ 지원방안

- 현행 :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 중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 개선 : 1년 이상 운영 시설 중 일정 조건에 부합한 시설에 한해 지원(전액시비)

○ 지급대상 :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

- 시설 설치 및 법정 종사자 기준에 하자가 없는 센터
- 자치구 지도 점검 결과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처분(행정 절차법)을 받은 센터 제외
- 그 외 구청장이 시설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센터

⇒ 위 사항을 참조하여 자치구가 선정·추천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

○ 지급시기 : '13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정원에 따른 차등 지원(전액 시비)

(단위 : 천원)

유형별	정원	상근 종사자	기준액	비고
소규모형	19인 이하	2	1,000천원	
표준형	29인 이하	2	1,200천원	
확대형	30인 이상	3	1,40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종사자 급여일에 지급(자치구 대상자 신청 → 시 재배정)

○ 소요예산 : 500,000천원(전액시비)

- 산출기초 : 약 35개소 × 평균 1,200천원 × 12개월 = 500,000천원

5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기준

■ 2013년 주요 변경지원 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여름캠프비(상반기)		문예행사비(하반기)		연합행사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지원 금액	-	16×아동수	15×아동수	16×아동수	-	30,000

■ 여름캠프비 등 상반기 행사비 지원

- 지급대상 : '13년 3월 현재 운영중인 전 지역아동센터(미지원·미신고 포함)
- 지원내역 : 춘·하 캠프 및 문예행사비(차량임차, 프로그램비용 등)
- 지원금액 : 165,000천원(지원현액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 지급시기 : '13년 3월
- 지급방법
 - 【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 【자치구】 검토 후 사업비 신청 ⇒ 【서울시】 사업비 교부
- 소요예산 : 165,000천원(전액시비/아동 1인당 약 16천원 지원)

■ 문예행사 등 하반기 행사비 지원

- 지급대상 : '13년 10월 현재 운영중인 전 지역아동센터(미지원·미신고 포함)
- 지원내역 : 추·동 캠프 및 문예행사비(차량임차, 프로그램비용 등)
- 지원금액 : 165,000천원(지원현액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 지급시기 : '13년 10월
- 지급방법
 - 【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 【자치구】 검토 후 사업비 신청 ⇒ 【서울시】 사업비 교부
- 소요예산 : 165,000천원(전액시비/아동 1인당 약 16천원 지원)

■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

- 지급대상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교부
- 지원내역 : 연 1회 서울시 전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비 등
- 지급시기 : '13년 10월
- 지급방법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교부
- 소요예산 : 30,000천원(전액시비)

⑥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지원 기준 【'13년 변동 없음】

- 목 적 : 기존 및 신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서비스 점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역량 제고
- 지원대상 : 총 200개소
 - 진입평가 : 38개소('11년 1월 ~ '12년 2월말까지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 등)
 - 심화평가 : 162개소('10.12말 이전 신고하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등)
- 지원내용 : 시설당 500천원(심사위원비, 평가 준비비 등)
- 지원방법 : 평가 월에 자치구 재배정(자치구 ⇒ 센터 교부)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국비 30%, 시비 70%)

⑦ 지역아동센터 전자출결시스템 지원기준 【'13년 신규】

- 목 적 : 현행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출·결 사항을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제고 및 행정절차 경감 효과성 증대
- 추진계획 : 전자출결시스템 시행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단계적 실시
 - 시범사업 : '13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 대상 및 방법 확정
 - 공청회실시 : 시범 사업 후 문제점 및 제도개선 검토
 - 전면실시 : '13년 하반기 중 운영비 지원 전 센터 실시

※ 추진계획은 전자출결시스템 T/F팀의 결정에 따라 일정 등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13년 1월현재 운영비 지원(국비·시비포함)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 시설 당 33천원(시스템 운영 비용)
- 지원방법 :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자치구 ⇒ 지원센터 교부)
- 소요예산 : 151,668천원(전액시비)
 - 산출기초 : 약 383개소 × 33천원 × 12개월 = 151,668천원

8]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기준 【'13년 신규】

- 목 적 :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 및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한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강북구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건립 비용 등
- 소요예산 : 500,000천원(전액시비)
- 추진방법 : 시에서 자체 마련중인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지원기준 방안을 참고하여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 시 검토 후 지원

※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지원기준 방안은 1월중 시달예정

VI 기타지원 사업

■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

- 목 적 :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및 사회적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아동복지교사 263명
- 지원단가 : 1인당 평균 109만원/월
- 지원방법 : 분기 별 자치구 재배정(자치구는 근무일지 확인 후 매월 급여지급)
- 지원내용 : 1개 지역아동센터에 1~3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아동의 학습 지도 및 독서, 예·체능 활동 등 지원
- 지원분야 : 총 5개 분야
 - 지역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지원
- 소요예산 : 3,426,950천원(국비 30%, 시비 70%)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운영지원

- 목 적 : 종사자 등의 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 도모
- 운영주체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박경양)
 - 협약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간)
- 지원방법 : '13년 사업계획서 확정 후 청구에 의거 분기별 교부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보건복지부 시·도지원단 운영지침 준용)
- 소요예산 : 313,333천원(국비 30%, 시비 70%)

■ 지역아동센터 우수종사자 표창 수여

- 목 적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우수종사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사명감 제고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13년 운영비 지원 시설 중 평가 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생활복지사) 등 25명 내외
- 선정방법 : 자치구청장 추천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후 확정

VII 주민참여예산 지원

■ 구립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 목 적 :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에 대한 전문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강화
- 사업기간 : 2013. 1 ~ 6월
- 지원대상 : 서대문구 북가좌동 283-19(대 189.1 m^3 , 건물 460.56 m^3)
- 지원내역 :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용 등
- 지원방법 : 서대문구 교부(자치단체자본보조)
 - '13년 1월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검토
 - '13년 1월 : 사업비 교부
 - '13년 6월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검토
- 소요예산 : 2,000,000천원(전액시비)

■ 지역아동센터 텃밭 상자 가꾸기 사업

- 목 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및 생태·환경에 중요성 교육을 통한 아동 건전 육성
- 사업기간 : 2013. 3 ~ 12월
- 지원대상 : 전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역 : 상자 텃밭 모종 제공, 생태교육 강사비 등
- 지원방법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에 위탁·진행
 - '13년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 '13년 3월 : 사업 개시
 - '13년 12월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검토
- 소요예산 : 60,000천원(전액시비)

VIII

행정 사항

■ 서울특별시

-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예산 지원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간주처리 및 추가비용 확보
- 2013년 평가 기본계획 수립
- 지역아동센터 우수종사자 표창 계획 수립
- 기타 시장지시사항 및 주요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자치구

- '13년 변경된 지침 참조하여 세부 운영 계획수립
 - 기본운영비 기준액 변경에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기준 수립
 - 2013년 평가(진입심화) 기본계획 수립
 -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등 선정기준 마련
 -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 지원중단 및 감액지원 대상 범위 설정 등
- 아동복지교사 관련 업무 드림스타트센터(자치구) 직접 수행에 따른 계획수립 및 노무관리
 - 아동복지교사 배정, 관리 업무 매뉴얼 등(자치구 실정 고려)

■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붙임문서 1. 2013년 지역아동센터 예산 확정내시 1부.

2. 2013년 지역아동센터 주요 변경내역(보건복지부) 1부. 끝.